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함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e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일러두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해당 감염병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방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른 지침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자가격리자 일반치료 연계 지침」,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p>〈법무지침팀〉 일러두기 법적 근거 및 대응방향 관련 사항 안내 다른 지침과의 관계 명확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목차	V. 역학조사 1.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 관련 역할 및 책임 2. 역학조사 실무 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4.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6. 역학조사 정보관리 VI. 대응방안 1. 개요 2. 의사환자 대응방안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4. 확진환자 대응방안 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 6. 방역조치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V. 확진환자 대응방안 1. 확진환자 관리 2. 확진환자 격리해제 3. 역학조사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중요도 상승)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신설) 6. 방역조치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VI.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1. 개요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법무지침팀> 역학조사와 대응방안의 큰 목차를 확진환자 대응방안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으로 목차 정리
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 -----</p> <p>◆ ----- -----</p> <p>◆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p> </div>	<환자관리팀> 사례 정의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의 관계 명시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	<p>1. 사례 정의</p> <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 까지)</p> <p>▶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p>	<p>1. -----</p> <p>▶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p> <p>-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913 331 1527 472"> <thead> <tr> <th>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th> <th>보건소 선별진료소</th> <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 <th>임시선별검사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 rowspan="2">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td> <td rowspan="2">사례정의 해당자</td> <td rowspan="2">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td> </tr> <tr> <td>1.5</td> </tr> <tr> <td>2단계 이상</td> <td colspan="2">모두 무료검사</td> <td></td> </tr> </tbody> </table> <p>▶ (1.5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p> <p>▶ (2단계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p> <p>- 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p>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1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1.5	2단계 이상	모두 무료검사			<p><진단검사운영팀/총괄조정팀></p> <p>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강조</p> <p>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기관별 검사 무료 대상 안내 명확화</p>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1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1.5																
2단계 이상	모두 무료검사															
10	<p>*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p> <p>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p> <p>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p> <p>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p> <p>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p>	<p>▶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11로 신고)</p> <p>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p> <p>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p> <p>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p> <p>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p>	<p><진단총괄팀></p> <p>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3	<p>3.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p> <p>나. 발생 신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함께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div>	<p>3. -----</p> <p>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 “환자분류” 중 “의사환자”에 체크하고, 또한 “비고(특이사항)”에도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도 상세하게 입력토록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비고(특이사항)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및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입력 ▶ 입력예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div>	<p>〈진단총괄팀〉</p> <p>자구 수정 및 자가검사 양성인 경우 입력 방법 안내</p>
14	<p>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즉시 우선 보고 	<p>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추정)사망원인 ----- ----- 	<p>〈환자관리팀〉</p> <p>문구 수정</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4	<p>○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p> <p>-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p> <p>(신설)</p>	<p>○ (의료기관/보건소) -----</p> <p>-----</p> <p>-----</p> <p>-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p>	<p><환자관리팀></p> <p>발생, 사망 신고관련 상세설명 추가</p>
14			<p><환자관리팀></p> <p>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화면 업데이트</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IV.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6 ~ 17	<p>○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p> <p>-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요청</p> <p>(신설)</p>	<p>(1) -----</p> <p>○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p> <p>○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p> <p>○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p> <p>○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 배정 요청▶</p> <p>○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p>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p> </div>	<p><격리관리팀></p> <p>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역할 안내</p> <p><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p> <p>인천공항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응급환자에 대한 협조요청(정정) 안내 적용('21.1.19, 중수본-2122호)</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7	<p>○ 경증 확진자의 경우 < 공항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p> <p>-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는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p> <p>-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분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p> <p>< 항만 >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p> <p>-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p>	<p>(2) -----(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p> <p>○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임시생활시설은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확충팀-----</p> </div> <p>○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p> <p>○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p> <p>(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p> <p>○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p> </div> <p>○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p>	<p><격리관리팀>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역할 안내</p> <p><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입소 관련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에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으로 업무 소관 변경</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p>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p> <p>*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p> <p>- (외국인) 검역소는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p> <p>*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p>	<p>-----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p> <p>▶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p> <p>○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p> <p>▶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p>	
18	<p>나) 병상배정 통보</p> <p>○ (시·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p>	<p>나) -----</p> <p>○ ----- -----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p>	<p><격리관리팀> 병상배정 관련 결과 통보 시설 추가</p>
21	<p>○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p>	<p>○ ----- 12~13일-----</p>	<p><공통> 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V. 역학조사 → 확진환자 대응방안			
25	<p>가. 확진환자 관리</p> <p>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중 적절한 자기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p style="font-size: x-small;">* 【고위험군】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5세 이상 ②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③ 실내 공기질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④ 특수상황 : ▲ 고도 비만 ▲ 임신부 ▲ 투석환자 ▲ 이식환자 ▲ 정신질환자 등 <p style="font-size: x-small;">※ 60-64세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설 또는 병원 입소 결정</p> </div>	<p>1. -----</p> <p>다.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x-small;">▶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의 병상을 우선으로 하되, ①~②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 가능. 이 경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며 폐렴, 호흡곤란 등 증세 악화시 전원 <p style="font-size: x-small;">▶ 고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성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② 실내 공기질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③ 특수상황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p style="font-size: x-small;">▶ 65세 이상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div>	<p>〈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변경 안내 적용 (’20.12.18, 중수본-33428호)</p>
26	<p>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p> <p>라) 시설(생활치료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마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p style="margin-left: 20px;">*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p>	<p>1) -----</p> <p>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p>〈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 및 소관 삭제</p>
27	<p>②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p> <p>※ 가능한 관할 지역 내 가용할 병상이 부족 시 적용</p>	<p>2)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p> </div>	<p>〈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자구 수정</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8	<p>다) 시설(생활치료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당일 마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p>* 퇴소일까지는 중수본에서 발급</p>	<p>다) -----</p> <p>○ -----</p> <p>-----</p> <p>○ -----</p> <p>-----</p> <p>▶ -----</p> <p>-----</p>	<p>〈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p> <p>자구 수정 및 소관 확인</p>
30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p>◆ 참고</p> <p>○ -----</p> <p>-----</p> <p>-----</p> <p>○ -----</p> <p>-----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p>	<p>〈환자관리팀〉</p> <p>격리해제 기준 적용에 있어 현장의료진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강화하기 위해 문구 추가</p>
30	<p>2) 격리해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p>(신설)</p>	<p>다. 격리해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퇴원(소)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전달 <p>▶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시: 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달</p> <p>▶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서 격리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달</p>	<p>〈환자관리팀〉</p> <p>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두 격리해제자에 대한 안내문 전달</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5	<p>2. 역학조사 실무</p> <p>○ 역학조사 방법</p> <p>- 환경조사(시설, 업무형태 등) 및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p>	<p>1. 개요</p> <p>라. 방법 및 내용</p> <p>- ----- 환경검체 -----</p> <p>-----</p>	<p><역학조사팀></p> <p>역학조사 방법 중 인체검체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검체로 명확하게 자구 수정</p>
35	<p>○ 역학조사 내용</p>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및 기초역학조사서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p> <p>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여부 등</p>	<p>▶ 역학조사 주요 내용</p> <p>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록장애인 및 예방접종 여부 등</p> <p>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환자의 증상발현일, 확진일,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 통보시까지 이동통신 상 머무른 장소 등 ⇒ 필요시 GPS, 신용카드 등 조회 및 CCTV 확인</p> <p>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확진자와의 접촉강도 및 접촉시간, 위험지역 해외 여행-방문력 등 : 집단시설(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력, 이동수단, 마스크 착용 여부 등 : 접촉자, 공동노출자 및 추가환자 발생 여부 : 이전 집단발생 사례와의 관련성, 선행확진자 유무 및 접촉 여부 등</p> <p>④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력,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및 사망원인 ⇒ 필요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p> <p>⑤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사망사례 역학조사 시 신고된 질환 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p>	<p><역학조사팀></p> <p>역학조사 과정 중 수집할 수 있는 인적 사항에 예방접종 내용 추가</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36	(신설)	<p>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등록</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응지침」 참조</p> <p>○ (확진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권역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p> <p>▶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p> <p>○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p> <p>▶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가 역학조사 실시</p> <p>○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p> <p>▶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최초 인지 후 각각 24시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p> <p>▶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위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권역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p>	<p><역학조사팀> 검역대응 단계 중 검역소, 보건소 업무 명시</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p>가. 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집단시설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고지문 등) 	<p>가. -----</p> <p>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 	<p><역학조사팀></p> <p>접촉자 관련 조치 대상 시설에 사업장 추가</p>
41	<p>나. 현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 (사전고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76조의2 개인정보 제공 요청 	<p>나. -----</p> <p>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감염병예방법」▶ ----- <p>▶ 관련 조문 :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p>	<p><역학조사팀></p> <p>감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p>
41	<p style="text-align: center;">【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p>▶ -----</p> <p>- -----</p> <p>⇒ -----</p> <p>- -----</p> <p>⇒ -----</p> <p>-----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p>	<p><역학조사팀></p> <p>자구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1	<p>(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p> <p>* 관련 : 감염병예방법(제47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p> <p>(신설)</p>	<p>○ (-----) -----(사업장, 직장, 학교, 병원 등) -----</p> <p>-----</p> <p>▶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 명령 가능</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p>	<p><역학조사팀></p> <p>시설 관리 대상에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파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명문화</p> <p><역학조사팀/법무지침팀> 소독 후 시설 재개시간 불필요한 연장 지양 안내 및 정리</p>
42	<p>-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p> <p>·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출장소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p> <p>(신설)</p>	<p>○ (-----) -----</p> <p>-----</p> <p>-----</p> <p>-----</p> <p>-----</p> <p>-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p>	<p><역학조사팀></p> <p>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정보 수집 수단 추가</p> <p>(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2	<p>다. 조치 사항</p> <p>○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p> <p>- 시·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 계획 수립</p> <p>·(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p> <p>·(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 능력 등</p> <p>·(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p> <p>·(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p>	<p>다. -----</p> <p>1) -----</p> <p>- -----</p> <p>-----운영 인력 등에 -----</p> <p>-----</p> <p>▶ (-----) -----, 사업장 내 숙소사 등 집단시설 포함</p> <p>: 외국인의 경우, 시도 다문화센터(통역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 및 다국어 번역본(기초/심층 역학조사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위험도평가 및 역학조사 수행</p> <p>▶ (-----) -----, 협력업체 및 인적교류 현황 등</p> <p>▶ (-----) -----</p> <p>▶ (-----) -----</p>	<p><역학조사팀></p> <p>자구 수정</p> <p>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 발생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부분 현행화</p>
42	<p>-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p> <p>*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환자·보호자·직원 등 관리, 방문객 관리,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p> <p>(신설)</p>	<p>○ -----</p> <p>▶ 집단시설 및 -----</p> <p>-----</p> <p>▶ 협력업체 및 업종별 관할 관리감독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등</p>	<p><역학조사팀></p> <p>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도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명확히 함</p> <p>협조체계 구축 대상 명문화</p>
42 ~ 43	<p>- 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p> <p>* 응급실·병동(입원실)·외래·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관 폐쇄여부·범위(단위)·조치사항 등 결정</p>	<p>○ -----권역센터/----- 및 해당 시군구, 시설장과 -----</p> <p>-----</p> <p>▶ -----</p> <p>-----</p>	<p><역학조사팀></p> <p>자구 수정</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5	<p>- 집단시설 폐쇄 결정</p> <p>·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은 경우 시설관리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폐쇄(전체/외래, 입원 등 일부) 여부 결정 (신설)</p>	<p>다) -----</p> <p>○ -----, 범위 및 기간 결정</p> <p>○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내 감염 및 전파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 결정(소독명령과 폐쇄명령 구분)</p> <p>▶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명령 가능</p> <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제시된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시설 재개시간의 불필요한 연장 지양</p>	<p>〈역학조사팀〉</p> <p>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폐쇄 조치 근거 및 구분을 통해 혼선 방지 및 불필요한 폐쇄 조치 제한 안내</p>
47	<p>라. 상황 보고</p> <p>○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도 즉각대응팀 조사·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 관리청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p> <p>*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p>	<p>라. 상황 보고</p> <p>○ -----</p> <p>-----</p> <p>-----</p> <p>▶ 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p> <p>▶ 전산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추후 통보 예정)</p>	<p>〈역학조사팀〉</p> <p>자구 수정</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47	<p>마. 협력 업무</p> <p>○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주요조치 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215 320 853 963"> <thead> <tr> <th>구분</th> <th>역할</th> </tr> </thead> <tbody> <tr> <td>시설·환경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td> </tr> <tr> <td>접촉자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td> </tr> <tr> <td>폐기물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사용 린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폐기물 처리시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td> </tr> <tr> <td>기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 체계 유지 </td> </tr> </tbody> </table>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사용 린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폐기물 처리시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 체계 유지 	<p>마. -----</p> <p>2) -----</p> <table border="1" data-bbox="887 316 1547 999"> <thead> <tr> <th>구분</th> <th>역할</th> </tr> </thead> <tbody> <tr> <td>시설·환경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td> </tr> <tr> <td>접촉자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td> </tr> <tr> <td>폐기물 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 폐기물(거즈, 일회용 개인보호구 등) -- * ----- 하고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세탁 후 사용 가능 </td> </tr> <tr> <td>기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 -- </td> </tr> </tbody> </table>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 폐기물(거즈, 일회용 개인보호구 등) -- * ----- 하고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세탁 후 사용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 -- 	<p>〈역학조사팀〉</p> <p>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의료도구 및 감염성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이 가능한 린넨 등은 폐기대상에서 제외하여 손실보상심의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p> <p>협조 요청 유관기관 명문화</p>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사용 린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폐기물 처리시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 체계 유지 																						
구분	역할																						
시설·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성 폐기물(거즈, 일회용 개인보호구 등) -- * ----- 하고 환자가 사용한 린넨은 세탁 후 사용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 --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0	<p>5. 자가격리자 대응방안</p> <p>나. 자가격리 절차 및 방법</p> <p>2) 자가격리 방법</p> <p>○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p> <p>☞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 ('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영유아 공동 격리】</p> <p>*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에 한함</p> <p>• 영유아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p> <p>① 가구원 중 1명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함</p> <p>② 공동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게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p> <p>③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p> <p>- 자가격리 통지서는 해당 영유아 및 공동격리자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각각 수령증을 징구할 것</p> <p>☞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p> </div>	<p>3-3. -----</p> <p>나. 자가격리 절차</p> <p>다. 자가격리 방법</p> <p>○ ----- -----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공동 격리</p> <p>-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적용</p> <p>- 영유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p> <p>- 기 타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 대상 및 범위 최소화</p> <p>- 장애인, 영유아 등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p>① 가구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함</p> <p>② 공동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게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p> <p>③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p> </div> <p>- 공동격리자에게도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징구</p> <p>☞ 관련서식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공동격리자용)</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ackground-color: #e0ffe0;"> <p>▶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적용</p> </div>	<p><격리관리팀></p> <p>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서 공동격리 대상인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동 격리사항 명시</p> <p>공동격리자 지원에 대한 명확화</p>
5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p> <p>•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p> <p>-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 가능</p> <p>▲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p> <p>♣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p> <p>-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유선확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목록화 하는 등의 대비 필요</p> <p>•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p> <p>* 병원진료, 치료,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의 필요한 경우 적용</p> <p>-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p> <p>-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규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p> <p>• 자가격리 통보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가 예정된 경우</p> <p>* 병원진료, 치료 등이 예정된 경우 적용</p> <p>- 치료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 뒤 표준주의하면서 치료 실시</p> <p>* 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를 위해 외출 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외출 직전 체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하며 외출의 전(全) 과정을 동행</p> </div>	<p>▶ 자가격리 중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p> <p>----- ----- ----- -----</p> <p>▶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p> <p>⇒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적용</p>	<p><격리관리팀></p> <p>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현행 내용 유지 및 간결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1	<p>다. 자가격리 해제</p> <p>-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p>	<p>라. -----</p> <p>○ (-----) -----</p> <p>-----12~13-----</p> <p>-----</p> <p>-----</p>	<p><격리관리팀></p> <p>관할 지자체 검사 인력 등 종합적인 여건에 따른 검사 지연을 고려하여 검사일 수정</p>
51	<p style="text-align: center;">[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p> <p>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p> <p>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p> <p>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p> <p>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p> <p>⑤ 만 65세 이상</p> <p>⑥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p>	<p>▶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p> <p>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p> <p>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p> <p>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p> <p>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p> <p>⑤ 만 65세 이상</p> <p>⑥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p> <p>▶ 필요 시 지자체에서 추가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p>	<p><격리관리팀></p> <p>자구 수정</p> <p>자가격리자 격리해제 후 확진 사례 다수 발생하여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확대 필요</p>
52	<p>라. 기타 사항</p> <p>2)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p> <p>○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제한적 허용</p> <p>-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 (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p> <p>-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p> <p>-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p> <p>*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 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p>	<p>마. -----</p> <p>2) -----</p> <p>○ 자가격리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격리기간 중이라도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p> <p>▶ (대상) 해외입국 자가격리자*</p> <p>*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격리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p> <p>▶ (사유) 해당 지자체장이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으로 승인한 경우</p> <p>▶ (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p> <p>▶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p> <p>① 중도출국 사유 근거자료 / ② 항공권</p>	<p><격리관리팀></p> <p>적용 대상 명확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3	<p>5.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p> <p>○ 지역사회 내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로 인한 추가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방역관은 시·군·구 단위로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참고하여 강화된 감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우선순위(집단) 설정 - 감시 방법 (일제검사, 전수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 <p>※ (예) 감시 우선순위 설정 및 감시방법 결정</p> <table border="1" data-bbox="212 619 855 842"> <thead> <tr> <th>감시방법</th> <th>상황</th> </tr> </thead> <tbody> <tr> <td>일제검사</td> <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범위가 넓거나, 2) 지속, 반복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는 접촉자 특징이 어려울 경우</td> </tr> <tr> <td>전수검사</td> <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td> </tr> <tr> <td>표본검사</td> <td>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td> </tr> <tr> <td>유증상자 감시</td> <td>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td> </tr> </tbody> </table>	감시방법	상황	일제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범위가 넓거나, 2) 지속, 반복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는 접촉자 특징이 어려울 경우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	<p>3-4. -----</p> <p>가. 기본원칙</p> <p>○ -----</p> <p>-----</p> <p>-----</p> <p>-----</p> <div data-bbox="896 443 1541 858"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감시 우선순위(집단) 설정</p> <p>▶ 감시 방법 (전수검사, 선제검사, 표본검사, 유증상자 감시 등) 결정</p> <p>▶ 감시 우선순위 설정 및 감시방법 결정(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900 523 1536 817"> <thead> <tr> <th>감시방법</th> <th>상황</th> </tr> </thead> <tbody> <tr> <td>전수검사</td> <td>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 또는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켰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td> </tr> <tr> <td>선제검사</td> <td>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중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지침」 참조</td> </tr> <tr> <td>표본검사</td> <td>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td> </tr> <tr> <td>유증상자 감시</td> <td>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td> </tr> </tbody> </table> <p>▶ 경과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평가 후 지역사회 유행 감시 지속</p> </div>	감시방법	상황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 또는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켰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제검사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중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지침」 참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	<p>〈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p> <p>일제검사와 전수검사를 전수검사로 통합 및 자구 수정</p> <p>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방법으로 선제검사 정의 및 조건 추가</p>
감시방법	상황																						
일제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1) 노출범위가 넓거나, 2) 지속, 반복 노출 그리고 노출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는 접촉자 특징이 어려울 경우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의 노출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																						
감시방법	상황																						
전수검사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방문하거나 머문 시설(집단) 또는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노출시켰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집단)에서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노출 시설/집단의 구성원(입소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 전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제검사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거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지속되는 등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중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지침」 참조																						
표본검사	확진자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필요시 일부 시설/집단을 선정하여 검사																						
유증상자 감시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요양시설, 군 등 집단에서 증상발현 여부 감시 강화																						
53	<p>○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방법) 집단발생 사례를 관리하는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기간 내 특정 장소를 방문한 집단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시, 해당 관리대상이 속해있는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내 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시행 <p>* 최초 일제검사 시행 판단 지자체에서는 공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에 정보 공유 (신설)</p>	<p>나. ----- 전수-----</p> <p>○ (-----)-----</p> <p>----- 전수-----</p> <p>----- 전수-----</p> <p>----- 전수-----</p> <div data-bbox="913 1109 1541 1343"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p> <p>-----</p> <p>▶ 이미 정책적으로 실사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등)</p> </div>	<p>〈역학조사팀〉</p> <p>일제검사와 전수검사 통합에 따른 용어 정리</p> <p>〈법무지침팀〉</p> <p>정책적 실시 결정된 검사의 경우 가능 사항 명시</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4	(신설)	<p>다. 지역사회 선제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방법) 지자체는 선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센터와 사전 협의하고 계획서를 포함하여 권역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함. 권역센터는 해당 지역·시설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검사 실시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환산함(접수 후 24시간 이내). 지자체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선제검사 시행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권역센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우선으로 선(先) 안내 후, 공문 실시 가능</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주체) 전액 국비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이미 정책적으로 실사가 결정된 검사의 경우 질병관리청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실시 가능 (예: 어린이집 등 전국단위 실시 검사, 고위험집단시설(종사자, 이용자) 주기적 검사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 지자체(시·군·구)는 검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검사 실적을 검사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검사 종료 후(3~7일 이내), 선제검사 결과서를 관할 권역센터로 제출. 검사비 청구시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익월 첫째 주까지 검사 관리대장, 검사 실적 보고를 질병청으로 제출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 10px 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 관련서식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제출기한 : 검사 종료 후 3~7일 내)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p>〈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감시방법으로 선제 검사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절차 기술</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5	<p>6. 역학조사 정보관리</p> <p>○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p> <table border="1" data-bbox="210 316 860 483"> <thead> <tr> <th>구분</th> <th>기초역학조사서</th> <th>심층역학조사서</th> <th>집단사례조사서</th> </tr> </thead> <tbody> <tr> <td>작성</td> <td rowspan="2">시·군·구 보건소</td> <td rowspan="2">시·군·구 보건소 / 시·도</td> <td>—</td> </tr> <tr> <td>등록</td> <td>시·도</td> </tr> <tr> <td>관리(점검 등)</td> <td>—</td> <td>시·도</td> <td>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td> </tr> <tr> <td>평가/환류/지원</td> <td>—</td> <td>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 <td>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 </tr> </tbody> </table>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등록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환류/지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p>3-5. -----</p> <p>나. -----</p> <table border="1" data-bbox="891 316 1541 467"> <thead> <tr> <th>구분</th> <th>기초역학조사서</th> <th>심층역학조사서</th> <th>집단사례조사서</th> </tr> </thead> <tbody> <tr> <td>작성</td> <td rowspan="2">시·군·구 보건소</td> <td rowspan="2">시·군·구 보건소 / 시·도</td> <td>시·군·구 보건소 / 시·도</td> </tr> <tr> <td>등록</td> <td>시·도</td> </tr> <tr> <td>관리(점검 등)</td> <td>—</td> <td>시·도</td> <td>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td> </tr> <tr> <td>평가/환류/지원</td> <td>—</td> <td>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 <td>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td> </tr> </tbody> </table>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등록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환류/지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p>〈역학조사팀〉</p> <p>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및 등록 관련 시·군·구 보건소 추가</p>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등록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환류/지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구분	기초역학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등록			시·도																																				
관리(점검 등)	—	시·도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평가/환류/지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중앙방역대책본부																																				
55	<p>- 집단사례조사서는 집단사례를 인지한 보건소에서 집단사례 조사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해당 집단사례의 지표환자 부분에 첨부)</p> <p>*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역학조사-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대상자 클릭’ 후 파일첨부</p> <p>*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시 심층 및 집단사례조사서 파일로 첨부</p> <p>*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 등은 시·도 역학조사반이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p> <p>*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의 기초역학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가 기한 내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도록 관리(신설)</p>	<p>○ (집단사례조사서) -----보건소 및 시도-----</p> <p>-----</p> <p>-----</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p> <p>-----</p> <p>▶ -----</p> <p>-----</p> <p>▶ -----</p> <p>-----</p> <p>▶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정보 담당자는 -----</p> <p>-----</p> <p>▶ 보건소 및 시·도는 주기적으로 미등록 역학조사서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함</p> </div>	<p>〈역학조사팀〉</p> <p>자구 수정 및 지자체 업무 명시</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6	<p>나. 확진환자 격리해제</p> <p>3)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보고)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는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발생 즉시 신고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PCR 재검출 사례는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 수정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259(2021.4.12.)호 	<p>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p> <p>가. 재검출 사례 발생 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보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div>	<p><환자관리팀> 자구 수정</p>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후 사례조사서 작성 - (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이름은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직접 입력 </div>	<p>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조사) ----- 사례 조사서 ----- ○ (결과보고) ----- 사례 조사서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결과보고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재검출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이름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입력 - 재검출 사례 중복 입력의 경우: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한자이름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div>	<p><환자관리팀> 자구 수정</p> <p>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에 대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선</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7	<p>○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및 접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p>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조치) 재검출자 및 접촉자 격리 조치 없음 <p>▶ 밀접접촉자 : 재검출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p>	<p><환자관리팀> 자구 수정</p>
57	<p>(신설)</p>	<p>라.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조사) 격리해제 후 사례분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 심층조사 시행(지자체) <p>▶ 사례분류 조건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다른 확진자 노출력 또는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검토)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례 검토 후 질병관리청 보고 및 필요시 선 격리 조치(지자체, 권역센터) ○ (사례판단) 질병관리청 내 관련 부서 간 심층 검토를 통한 최종적으로 사례 판단 <p>▶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검역 확진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확인 시), 재검역 추정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불충분 시)</p> <p>▶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면역저지에서의 재검출 사례 등</p>	<p><환자관리팀>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발생이 지속 보고되며, 특히 별도의 관리조치 요구되는 특이사례 보고가 증가되어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방안 필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8	(신설)	<p>▶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세부사항</th> <th>주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례 보고</td> <td>·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보고</td> <td>최초 인지 기관</td> </tr> <tr> <td>2</td> <td>사례 조사</td> <td>·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층조사 진행 (격리해제 후)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 다른 확진자 노출역 또는 -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td> <td>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td> </tr> <tr> <td>3</td> <td>심층 조사</td> <td>·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중심)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발생 - (역학) 재검출자로부터 추가전파 여부 - (검사) 시기별 Ct 값 변화</td> <td>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td> </tr> <tr> <td>4</td> <td>사례 검토</td> <td>· 지자체,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청 보고 (필요 시 선 관리조사)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td> <td>사도 관역별 질병대응센터</td> </tr> <tr> <td>5</td> <td>심층 검토</td> <td>· 질병관리청 관련 부서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리조사 적용(A)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 · 재검출 의심사례 등 필요 시 심층실 검사 시행(B) (감세 확보 가능 사례에 한함)</td> <td>질병관리청</td> </tr> <tr> <td>A</td> <td>관리조사 적용</td> <td>· 신규환자에 준한 관리조사 적용 - 격리입원치료 - 신규 확진 환자 번호 부여 (재검출 의심 사례 시)</td> <td>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 질병관리청</td> </tr> <tr> <td>B</td> <td>심층실 검사</td> <td>· 재검출 의심사례 등으로 인한 사례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 실시 - 확보한 검체에 따라 심층실 검사방법 결정</td> <td>질병관리청</td> </tr> <tr> <td>6</td> <td>최종 판단</td> <td>· 심층검토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관리조사 불필요한 재검출 사례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검출 추정사례 - 재검출 확진사례 (심층실 결과 필수)</td> <td>질병관리청</td> </tr> </tbody> </table>		세부사항	주관	1	사례 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보고	최초 인지 기관	2	사례 조사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층조사 진행 (격리해제 후)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 다른 확진자 노출역 또는 -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3	심층 조사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중심)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발생 - (역학) 재검출자로부터 추가전파 여부 - (검사) 시기별 Ct 값 변화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	4	사례 검토	· 지자체,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청 보고 (필요 시 선 관리조사)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	사도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5	심층 검토	· 질병관리청 관련 부서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리조사 적용(A)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 · 재검출 의심사례 등 필요 시 심층실 검사 시행(B) (감세 확보 가능 사례에 한함)	질병관리청	A	관리조사 적용	· 신규환자에 준한 관리조사 적용 - 격리입원치료 - 신규 확진 환자 번호 부여 (재검출 의심 사례 시)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 질병관리청	B	심층실 검사	· 재검출 의심사례 등으로 인한 사례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 실시 - 확보한 검체에 따라 심층실 검사방법 결정	질병관리청	6	최종 판단	· 심층검토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관리조사 불필요한 재검출 사례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검출 추정사례 - 재검출 확진사례 (심층실 결과 필수)	질병관리청	<p>〈환자관리팀〉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 추가</p>
	세부사항	주관																																				
1	사례 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보고	최초 인지 기관																																			
2	사례 조사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층조사 진행 (격리해제 후)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 다른 확진자 노출역 또는 -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3	심층 조사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중심)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발생 - (역학) 재검출자로부터 추가전파 여부 - (검사) 시기별 Ct 값 변화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																																			
4	사례 검토	· 지자체,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청 보고 (필요 시 선 관리조사)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	사도 관역별 질병대응센터																																			
5	심층 검토	· 질병관리청 관련 부서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리조사 적용(A)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검출로 인한 재검출 사례 · 재검출 의심사례 등 필요 시 심층실 검사 시행(B) (감세 확보 가능 사례에 한함)	질병관리청																																			
A	관리조사 적용	· 신규환자에 준한 관리조사 적용 - 격리입원치료 - 신규 확진 환자 번호 부여 (재검출 의심 사례 시)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사도 질병관리청																																			
B	심층실 검사	· 재검출 의심사례 등으로 인한 사례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 실시 - 확보한 검체에 따라 심층실 검사방법 결정	질병관리청																																			
6	최종 판단	· 심층검토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절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관리조사 불필요한 재검출 사례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검출 추정사례 - 재검출 확진사례 (심층실 결과 필수)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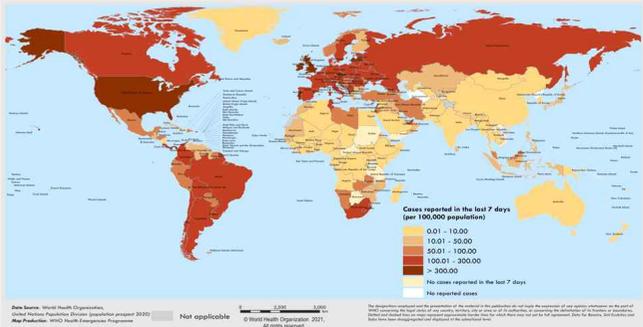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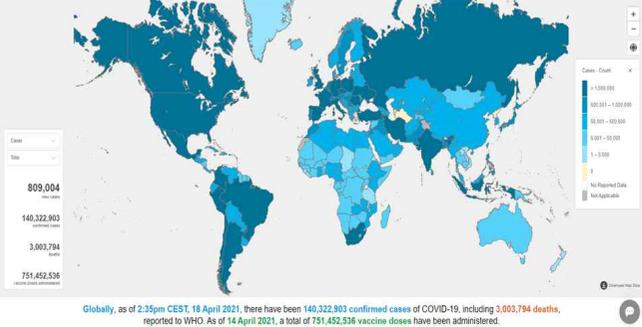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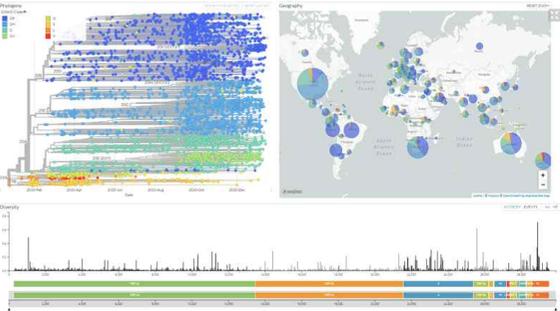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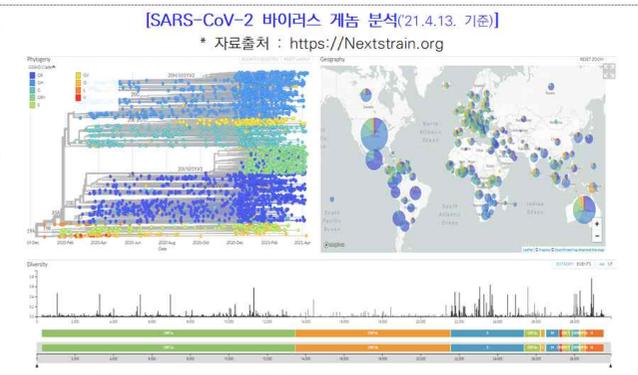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59	(신설)	<p>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해외유입 확진자 및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환자 ○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 격리가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 동실 사용이 가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아래의 경우에는 동실(同室) 사용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 노출자(함께 입국한 가족 등)의 경우 ② 동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경우 <p>- 특히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의료 기관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함</p>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환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강화된 환자관리 방안 지속 하에 자가 치료 가능(단, 자가치료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반 격리해제) 아래의 적용대상의 경우 검사기반 격리 해제 기준만 적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 ②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유행국가▶ 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 ③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사람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해외유입 상황평가를 통하여 월별 유행국가를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예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변이 또는 변이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비변이 감염자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 적용 	<p>〈환자관리팀〉</p> <p>변이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내 유입 증가와 지역사회 전파 사례 발생되고 있어 변이바이러스 환자 관리강화 조치필요</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60	9.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삭제)	〈환자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VI. 대응방안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61	1. 개요 가. 대상자 모니터링	1. --- 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법무지침팀〉 대상자의 명확화												
66 ~ 67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table border="1" data-bbox="212 671 855 850"> <thead> <tr> <th>구분</th> <th>사례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의사환자</td> <td>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td> </tr> <tr> <td>조사 대상 유증상자</td> <td>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margin-top: 5px;">*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div>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3. ----- 가. ----- 이용절차 1) --- <table border="1" data-bbox="891 671 1541 850"> <thead> <tr> <th>구분</th> <th>사례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의사환자</td> <td>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td> </tr> <tr> <td>조사 대상 유증상자</td> <td>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margin-top: 5px;">▶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div>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 관련하여 자가검사 관련 대응 추가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구분	사례 정의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68	4) 대응 절차 ○ 소독 및 환기 (신설)	4) 상황별 ----- ○ (소독 및 환기) - 자가검사 양성자가 가지고 온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 수거 후 안전하게 폐기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margin-top: 10px;">▶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div>	〈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가검사 안내」 참조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Ⅶ. 사망자 관리			
71	<p>3. 범위 및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044-202-3471~3474, 3481)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신설) 	<p>3. 범위 및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 ----- --- - (-----)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 (-----)----- ----- (1577-4129)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례지침 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p><환자관리팀/중수본 장례지원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 추가</p>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 ---)----- 	<p><환자관리팀>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p>
72	<p>4. 단계별 조치사항 (신설)</p>	<p>4. -----</p> <p>가. 평상시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p><환자관리팀> 평상시 업무 신설</p>
72	<p>가. 임종 임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가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p>나. ---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환자관리팀> 신설 항목에 따른 순서 및 명칭 변경</p> <p><중수본 장례지원팀> 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 (2021.2.23.) 내용 반영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72	<p>나. 사망 (신설)</p> <p>○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p>	<p>다. ---</p> <p>○ (필수사항)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p> <p>▶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p> <p>○ (보건소) 유족에게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안내</p> <p>○ (-----) ----- ----- -----</p>	<p>〈환자관리팀〉 코로나19사망자 애도시간 부족 민원에 따라,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안내</p>
Ⅷ. 실험실 검사 관리			
75	<p>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p> <p>-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 의뢰서(서식 18)와 함께 수송</p> <p>(신설)</p>	<p>1. ----- 나. -----</p> <p>1) 검체종류</p> <p>○ (-----) ----- ----- -----</p> <p>▶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p>	<p>〈진단총괄팀〉 검체채취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검체의 우선순위 적용</p>
81	<p>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다. (질병대응센터)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p> <p>(신설)</p>	<p>5. ----- 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p> <p>○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로 결과 통보</p> <p>▶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로 당일 보고</p>	<p>〈진단총괄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4판, '21.2.24.개정) 내용과 통일</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Ⅸ. 환경관리(소독·환기)																																																																									
83	전체	(삭제)	〈법무지침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등 참조																																																																						
Ⅺ. 질병개요																																																																									
89	<p>2. 발생 현황</p> <p>가. 국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타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p>*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0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20.3.11 WHO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 선언 ○ '21.1.19. 223개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94,124,612명 발생, 2,034,527명 사망 	<p>2. -----</p> <p>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각 국가 ▶ ----- ○ -----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21.5.9.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1,206,243,409건 실시 ○ '21.5.10.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157,973,438명 발생 3,288,455명 사망 	〈법무지침팀〉 현황 업데이트																																																																						
89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WHO Dashboard(1.7.)</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 <th>누적 발생현황</th> <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 <th>누적 사망현황</th> </tr> </thead> <tbody> <tr> <td>미주</td> <td>2,467,317</td> <td>41,329,493</td> <td>43,304</td> <td>954,545</td> </tr> <tr> <td>유럽</td> <td>1,610,353</td> <td>30,509,880</td> <td>37,698</td> <td>666,237</td> </tr> <tr> <td>동남아시아</td> <td>204,654</td> <td>12,462,338</td> <td>3,410</td> <td>191,196</td> </tr> <tr> <td>지중해 동부</td> <td>183,178</td> <td>5,335,273</td> <td>2,846</td> <td>127,817</td> </tr> <tr> <td>아프리카</td> <td>177,252</td> <td>2,313,130</td> <td>5,000</td> <td>52,905</td> </tr> <tr> <td>서태평양</td> <td>81,775</td> <td>1,266,428</td> <td>1,124</td> <td>22,244</td> </tr> </tbody> </table>	구분	7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2,467,317	41,329,493	43,304	954,545	유럽	1,610,353	30,509,880	37,698	666,237	동남아시아	204,654	12,462,338	3,410	191,196	지중해 동부	183,178	5,335,273	2,846	127,817	아프리카	177,252	2,313,130	5,000	52,905	서태평양	81,775	1,266,428	1,124	22,244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WHO Dashboard('21.5.1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 <th>누적 발생현황</th> <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 <th>누적 사망현황</th> </tr> </thead> <tbody> <tr> <td>미주</td> <td>1,212,026</td> <td>63,677,932</td> <td>33,006</td> <td>1,556,180</td> </tr> <tr> <td>유럽</td> <td>860,676</td> <td>52,914,444</td> <td>18,273</td> <td>1,105,636</td> </tr> <tr> <td>동남아시아</td> <td>2,877,800</td> <td>25,938,567</td> <td>29,394</td> <td>313,304</td> </tr> <tr> <td>지중해 동부</td> <td>273,880</td> <td>9,462,769</td> <td>5,613</td> <td>189,887</td> </tr> <tr> <td>아프리카</td> <td>40,983</td> <td>3,362,371</td> <td>999</td> <td>83,970</td> </tr> <tr> <td>서태평양</td> <td>126,421</td> <td>2,616,609</td> <td>1,811</td> <td>39,465</td> </tr> </tbody> </table>	구분	7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1,212,026	63,677,932	33,006	1,556,180	유럽	860,676	52,914,444	18,273	1,105,636	동남아시아	2,877,800	25,938,567	29,394	313,304	지중해 동부	273,880	9,462,769	5,613	189,887	아프리카	40,983	3,362,371	999	83,970	서태평양	126,421	2,616,609	1,811	39,465	〈법무지침팀〉 WHO Dashboard 업데이트
구분	7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2,467,317	41,329,493	43,304	954,545																																																																					
유럽	1,610,353	30,509,880	37,698	666,237																																																																					
동남아시아	204,654	12,462,338	3,410	191,196																																																																					
지중해 동부	183,178	5,335,273	2,846	127,817																																																																					
아프리카	177,252	2,313,130	5,000	52,905																																																																					
서태평양	81,775	1,266,428	1,124	22,244																																																																					
구분	7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7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1,212,026	63,677,932	33,006	1,556,180																																																																					
유럽	860,676	52,914,444	18,273	1,105,636																																																																					
동남아시아	2,877,800	25,938,567	29,394	313,304																																																																					
지중해 동부	273,880	9,462,769	5,613	189,887																																																																					
아프리카	40,983	3,362,371	999	83,970																																																																					
서태평양	126,421	2,616,609	1,811	39,465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0			<p><범무지침팀> WHO GIS 현황 업데이트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p>
90	<p>나.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0. 총 73,518명 발생, 1,300명 사망 	<p>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11. 총 128,283명 발생, 1,879명 사망 	<p><범무지침팀> 국내 현황 업데이트</p>
91	<p>3. 병원체 및 병원소</p> <p>가. 병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96,837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1.20. 기준, GISAID) * 1개('19.12.24.) → 339개('20.1.31.) → 1,567개('20.4.30.) → 396,837개('21.1.20.)  <p style="text-align: right;">('21.1.20. 기준)</p> <p><SARS-CoV-2 바이러스 게놈 분석></p> <p>* 자료출처 : https://Nextstrain.org</p>	<p>3. -----</p> <p>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011,071개 -----(5.4. - -----) <p>▶ ----- 396,837개('21.1.20.) → 1,011,071개('21.5.4.)</p>  <p>[SARS-CoV-2 바이러스 게놈 분석('21.4.13. 기준)]</p> <p>* 자료출처 : https://Nextstrain.org</p>	<p><범무지침팀>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업데이트</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94	<p>※ 참고 :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중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본 자료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212 438 862 726"> <thead> <tr> <th>구분</th> <th>집단사례명</th> <th>발생규모(명)</th> <th>위험요인</th> </tr> </thead> <tbody> <tr> <td>실내</td> <td>서울 00탁구장 관련</td> <td>42</td> <td>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td> </tr> <tr> <td>운동 시설</td> <td>강원 00체육시설 관련</td> <td>72</td> <td>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 </tr> <tr> <td></td> <td>충남 00댄스 관련</td> <td>116</td> <td>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 </tr> <tr> <td>노래방</td> <td>인천 00노래방 관련</td> <td>6</td> <td>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td> </tr> <tr> <td>주점</td> <td>경북 00주점 관련</td> <td>23</td> <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td> </tr> <tr> <td>커피숍</td> <td>경기 00커피숍 관련</td> <td>71</td> <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td> </tr> </tbody> </table>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규모(명)	위험요인	실내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운동 시설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p>▶ ----- 밀폐된 공간에서의 주요 집단사례 * ----- 변동 가능하며, 확진자 수는 가족, 지인 등 추가전파사례를 포함하고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907 438 1534 726"> <thead> <tr> <th>구분</th> <th>집단사례명</th> <th>규모(명)</th> <th>위험요인</th> </tr> </thead> <tbody> <tr> <td></td> <td>서울 00탁구장 관련</td> <td>42</td> <td>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td> </tr> <tr> <td>실내 운동 시설</td> <td>강원 00체육시설 관련</td> <td>72</td> <td>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 </tr> <tr> <td></td> <td>충남 00댄스 관련</td> <td>116</td> <td>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td> </tr> <tr> <td>노래방</td> <td>인천 00노래방 관련</td> <td>6</td> <td>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td> </tr> <tr> <td>주점</td> <td>경북 00주점 관련</td> <td>23</td> <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td> </tr> <tr> <td>커피숍</td> <td>경기 00커피숍 관련</td> <td>71</td> <td>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td> </tr> </tbody> </table>	구분	집단사례명	규모(명)	위험요인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실내 운동 시설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p><역학조사팀> 공기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명확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으로 표현 변경</p>
구분	집단사례명	발생규모(명)	위험요인																																																								
실내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운동 시설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구분	집단사례명	규모(명)	위험요인																																																								
	서울 00탁구장 관련	42	마스크착용 미흡, 운동 후 음주 또는 음식 섭취, 지하층, 밀폐 구조, 공간 협소																																																								
실내 운동 시설	강원 00체육시설 관련	72	마스크착용 미흡,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충남 00댄스 관련	116	마스크착용 미흡, 격렬한 움직임, 소리지르기, 공간 협소, 밀폐 구조																																																								
노래방	인천 00노래방 관련	6	좁은 공간 노래부르기, 환기 불량																																																								
주점	경북 00주점 관련	23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커피숍	경기 00커피숍 관련	71	환기 불량, 거리두기 미흡, 2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98	<p>마. 치명률 ○ 세계 치명률은 2.16% (WHO, 1. 20. 기준) ○ 우리나라는 1.77% (1. 20. 0시 기준) * (참고문헌) covid19.who.int, WHO, 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신설)</p>	<p>마. ----- ○ 전 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함</p> <p>▶ ----- ▶ (참고문헌) JPA Ioannidis. Infection fatality rate of COVID-19 inferred from seroprevalence dat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p>	<p><법무지침팀> WHO 치명률에 대한 문헌 및 정보 업데이트</p>																																																								
99	<p>8. 예방 백신 ○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의 여러 백신들이 사용 및 개발(임상시험) 중</p>	<p>(삭제)</p>	<p><법무지침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생거구분	거주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국민등록번호(영문)	귀성상태	역학조사 여부	접촉일
1.	○○○	197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생거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2.	○○○	1970.02.11	남	주소	상세주소	생거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3.	MGO	200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생거구분	거주구분	N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4.	○○○	200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생거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 반드시 본 양식에 따라 역설파일(시스템) 접속자 역설 등록 > 역설양식다운로드로 작성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작성」에 업로드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 (조치사항)
 - 시설환경 관리
 - 노출자(접촉자) 조치사항
 - 향후계획
- (추가 전파시설 노출 현황)

유형	시설명	지표환자 확진일	추가 환자수	최종 확진일	비고
종교/요양시설/의료기관					
직장/교육시설					
기타					

- 현장사진 (시설, 주요접촉자, 위험요인 등)

지택 cctv	000 000점
0000 000점	00000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거주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직업, 직업명(직업명)	귀성상태	역학조사 여부	접촉일
1.	○○○	197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2.	○○○	1970.02.11	남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3.	MGO	200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거주구분	N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4.	○○○	2000.08.11	남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거주구분	Y	국적	핸드폰	연락처	○○○○○	귀성	Y	접촉일

※ 반드시 본 양식에 따라 역설파일(시스템) 접속자 역설 등록 > 역설양식다운로드로 작성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작성」에 업로드

- (조치사항)
 - 시설환경 관리
 - 노출자(접촉자) 조치사항
 - 향후계획
- (추가 전파시설 노출 현황)

유형	시설명	지표환자		추가 환자수	최종 확진일	비고
		확진일	확진일			
종교/요양시설/의료기관						
직장/교육시설						
기타						

- (예방접종 효과평가 조사결과)
 - 분석대상:
 - 조사설계:
 - 조사결과:

(단위: 명)

대상	백신종류	전단검사결과 ¹⁾		
		개	양성	음성
접종자	계			
	화이자(MRNA)			
	모더나(MRNA)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백터)			
	얀센(바이러스백터)			
비접종자	기타()			
	계			

¹⁾ 감염여부 확인 검사 시행 (○ 일제검사, ⊙ 증상기반 검사, ⊕ 격리해제(모니터링 종료시 검사) 방식 기술 (예) 집단발생 인지시 일제검사 + 격리(모니터링기간) 중 증상기반 검사 + 격리해제(모니터링 종료 전) 검사로 확인된 결과

- 현장사진 (시설, 주요접촉자, 위험요인 등)

〈역학조사팀〉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에 변수 명확화 및 예방
접종력 조사 항목 등 수정

〈역학조사팀〉
예방접종 효과평가 조사 결과 추가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29	<p>〈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p>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table border="1" data-bbox="212 311 855 454"> <thead> <tr> <th colspan="4">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Name</td> <td></td> <td>생년월일 Birthdate</td> <td></td> </tr> <tr> <td>격리해제 장소명 Name of discharge place</td> <td colspan="3">(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HOME, ○○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td> </tr> <tr> <td>격리시작일 Start Date of isolation</td> <td></td> <td>격리해제일 Discharge Date of isolation</td> <td></td> </tr> </tbody> </table> <p>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p> <p>We confirm that this person is discharged according to meeting the standard of COVID-19 Isolation/Quarantine Release</p> <p>발행일: (예시) 2021.00.00</p> <p>△△ 보건소장 (인)</p>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date		격리해제 장소명 Name of discharge plac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HOME, ○○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격리시작일 Start Date of isolation		격리해제일 Discharge Date of isolation		<p>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p> <table border="1" data-bbox="896 295 1538 470"> <thead> <tr> <th colspan="4">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NAME</td> <td></td> <td>생년월일 DATE OF BIRTH</td> <td></td> </tr> <tr> <td>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td> <td colspan="3">(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td> </tr> <tr> <td>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td> <td></td> <td>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td> <td></td> </tr> </tbody> </table> <p>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case-patients from isolation.</p> <p>※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p> <p>발행일: (예시) 20 .00.00</p> <p>△△ 보건소장 (인)</p>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p>〈환자관리팀〉 격리해제 대상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 추가</p>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date																																	
격리해제 장소명 Name of discharge plac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HOME, ○○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격리시작일 Start Date of isolation		격리해제일 Discharge Date of isolation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130	<p>(신설) 〈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p>서식 20의2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p> <table border="1" data-bbox="896 901 1538 1396"> <thead> <tr> <th>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th> </tr> </thead> <tbody> <tr> <td> <p>■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p> <p>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p><임상결과 기반 격리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p><검사 기반 격리해제> -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p>■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제거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리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p> <p>■ 청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선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청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b.go.kr/ncmh/health.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p> <p>■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p> <p>※ 귀하에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인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p> </td> </tr> </tbody> </table> <p>〈환자관리팀〉 격리해제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격리해제자 안내문 추가</p>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p>■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p> <p>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p><임상결과 기반 격리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p><검사 기반 격리해제> -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p>■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제거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리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p> <p>■ 청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선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청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b.go.kr/ncmh/health.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p> <p>■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p> <p>※ 귀하에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인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p>	<p>〈환자관리팀〉 격리해제자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격리해제자 안내문 추가</p>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p>■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p> <p>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p> <p><임상결과 기반 격리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p><검사 기반 격리해제> -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②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p>■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제거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리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p> <p>■ 청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선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청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b.go.kr/ncmh/health.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p> <p>■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p> <p>※ 귀하에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인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134	(신설)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p> <p style="text-align: center;">선제검사 계획서</p> <hr/> <p>① 검사 실시 필요성</p> <p style="font-size: small;">※ 예방 지역(시·도 및 시·군·구) 또는 대상 집단 등의 유형 요인에 근거하여 검사 실시 필요성 제시</p> <p>② 검사 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td> <td colspan="2"></td> </tr> <tr> <td>검사 대상자수</td> <td colspan="2"></td> </tr> <tr> <td>대상자 선정 근거</td> <td colspan="2"></td> </tr> </table> <p>③ 검사 기간</p> <p>시작일 - 종료일 2021. . . - 2021. . .</p> <p style="font-size: small;">*방역 요파 등을 고려하여 3주 이내로 실시</p> <p>④ 검사 방법 (해당란에 ■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30%;">검사소 운영</td> <td style="width: 30%;">검사소</td> <td style="width: 40%;">검사소</td> </tr> <tr> <td>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td> <td>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td> </tr> <tr> <td rowspan="2">검사 방법</td> <td>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td> <td>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td> </tr> <tr> <td>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td> <td></td> </tr> <tr> <td rowspan="2">검사 기관</td> <td>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td> <td>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td> </tr> <tr> <td> <small>*계획서 제출 전 검사 기관의 사전 합의 *비율의 합은 100%</small> </td> <td></td> </tr> <tr> <td rowspan="2">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td> <td>관리 방법</td> <td>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td> </tr> <tr> <td>제출 일자</td> <td>2021. . .</td> </tr> <p style="font-size: small;">*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검사관리 대장(서식3)'을 활용하고, 검사 종료 후 진단 검사 결과서(서식2)와 '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4)'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관할 시도와 질병대응센터에 공문으로 송부</p> <p style="font-size: x-small;">※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p> </table></div>	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			검사 대상자수			대상자 선정 근거			검사소 운영	검사소	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검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small>*계획서 제출 전 검사 기관의 사전 합의 *비율의 합은 100%</small>		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p><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감시 강화 방법으로 선제검사 계획서 양식 추가</p>
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																																
검사 대상자수																																
대상자 선정 근거																																
검사소 운영	검사소	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검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small>*계획서 제출 전 검사 기관의 사전 합의 *비율의 합은 100%</small>																															
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135	(신설)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p> <p style="text-align: center;">선제검사 결과서</p> <hr/> <p>① 검사 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td> <td colspan="2"></td> </tr> <tr> <td>총 검사 건수</td> <td colspan="2"></td> </tr> <tr> <td>대상자 선정 근거</td> <td colspan="2"></td> </tr> </table> <p>② 검사 기간</p> <p>시작일 - 종료일 2021. . . - 2021. . .</p> <p>④ 검사 방법 (해당란에 ■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30%;">검사소 운영</td> <td style="width: 30%;">검사소</td> <td style="width: 40%;">검사소</td> </tr> <tr> <td>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td> <td>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td> </tr> <tr> <td rowspan="2">검사 방법</td> <td>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td> <td>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td> </tr> <tr> <td>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td> <td></td> </tr> <tr> <td rowspan="2">검사 기관</td> <td>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td> <td>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td> </tr> <tr> <td> <small>*비율의 합은 100%</small> </td> <td></td> </tr> <tr> <td rowspan="2">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td> <td>관리 방법</td> <td>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td> </tr> <tr> <td>제출 일자</td> <td>2021. . .</td> </tr> <p style="font-size: small;">*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검사관리 대장(서식3)'을 활용하고, 검사 종료 후 진단 검사 결과서(서식2)와 '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4)'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관할 시도와 질병대응센터에 공문으로 송부</p> <p style="font-size: x-small;">※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p> </table></div>	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			총 검사 건수			대상자 선정 근거			검사소 운영	검사소	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검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small>*비율의 합은 100%</small>		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p><역학조사팀/진단검사운영팀> 집단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감시 강화 방법으로 선제검사 결과서 양식 추가</p>
검사 대상 지역 (또는 직군)																																
총 검사 건수																																
대상자 선정 근거																																
검사소 운영	검사소	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input type="checkbox"/> 선별진료소 <input type="checkbox"/>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타)																														
검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input type="checkbox"/> PCR 검사(5건 휘합) <input type="checkbox"/> 신속항원검사*																														
	<small>*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small>																															
검사 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민간 수탁기관 건(<input checked="" type="checkbox"/>)																														
	<small>*비율의 합은 100%</small>																															
⑤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검사관리 대장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부 록			
147	<p>〈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p>〈격리관리팀〉</p> <p>자가격리 중 불가피한 외출 시 이동 수단 명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p>
149	<p>〈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참조합니다(부록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p>〈격리관리팀〉</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p>

<p>쪽</p>	<p>현행(9-5-1판)</p> <p>(신설) <부록 4의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p>	<p>10판 개정</p> <p>부록 4의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p> <p>▶ 관련근거: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지침(1판)」</p> <p>• 이 안내문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중 일반진료가 필요한 분” 에게 적용됩니다. • 일반진료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p> <p>[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① 시급하지 않은 진료 : 자가격리자 종료된 이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장기적인 진료 : 투약이 필요한 경우* : 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②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은 후 ③ 자가 격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④ 유선으로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에 따른 상담·처방 등)</p> <p>[한시적 비대면 진료]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 실시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유의 : 진료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제한된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전화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대리처방)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가능 나.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다.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p> <p>[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기간 중 체온 등 변화 없이 나타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의 : 아래 상황에 따른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① 시급한 진료가 사전 예정된 경우 : ①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급한 진료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자가격리 개시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바랍니다. ③이후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급한 진료 예시 : 두적, 안압저하 등</p> <p>②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담당공무원에 연락 후 이동하되,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이 어려울 정도의 응급 상황인 경우 119에 우선 신고 후 사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119 또는 119 구급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급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에 의한 중상 등</p> <p>[담당공무원]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p>	<p>개정사유</p> <p><격리관리팀>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신설에 따라 안내문 추가(공문으로 기 시행)</p>																																																																																																																																																																																																																																																																																																																																						
<p>150</p>	<p><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 - 알람 자료 - 공고/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p> <p>[수탁검사기관 : 20개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지역</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대표연락처</th> </tr> </thead> <tbody> <tr><td>1</td><td></td><td>(8)삼광의료재단</td><td>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td><td>02-3497-6100</td></tr> <tr><td>2</td><td></td><td>서원의료재단 씨재의원</td><td>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 320</td><td>1566-6500</td></tr> <tr><td>3</td><td>서울</td><td>진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td><td>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td><td>02-910-3103</td></tr> <tr><td>4</td><td>(6)</td><td>한글의료재단</td><td>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td><td>02-512-1729</td></tr> <tr><td>5</td><td></td><td>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td><td>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td><td>02-759-9900</td></tr> <tr><td>6</td><td></td><td>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td><td>서울특별시 강남구 화곡로 322</td><td>02-3623-1127</td></tr> <tr><td>7</td><td>부산</td><td>서원의료재단 씨재 부산의원</td><td>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td><td>1566-6500</td></tr> <tr><td>8</td><td></td><td>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td><td>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td><td>051-800-1101</td></tr> <tr><td>9</td><td>인천</td><td>(1) 의용병원 이원의료재단</td><td>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의 (송도동 13-49)</td><td>1600-000</td></tr> <tr><td>10</td><td></td><td>서원의료재단 대우강북검사센터</td><td>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td><td>1566-6500</td></tr> <tr><td>11</td><td>대구</td><td>(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td><td>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td><td>053-759-9982</td></tr> <tr><td>12</td><td></td><td>서원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td><td>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td><td>062-425-2188</td></tr> <tr><td>13</td><td>(7)</td><td>(4)서원(의)학연구소(SOIL)</td><td>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td><td>1800-0119</td></tr> <tr><td>14</td><td></td><td>녹십자의료재단</td><td>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td><td>1566-0131</td></tr> <tr><td>15</td><td></td><td>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td><td>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td><td>031-429-0700</td></tr> <tr><td>16</td><td>경기</td><td>(6)</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td><td>3888-1530</td></tr> <tr><td>17</td><td></td><td>진료법인 씨재의료재단</td><td>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td><td>031-936-2728</td></tr> <tr><td>18</td><td></td><td>티씨엔엠의원</td><td>경기도 용인시 용인로 1545</td><td>043-242-4950</td></tr> <tr><td>19</td><td>충북</td><td>(1)</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td><td>043-242-4950</td></tr> <tr><td>20</td><td>전북</td><td>(1)</td><td>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td><td>063-255-9119</td></tr> </tbody> </table> <p>[의료기관 : 121개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지역</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대표연락처</th> </tr> </thead> <tbody> <tr><td>1</td><td></td><td>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td><td>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td><td>1588-1511</td></tr> <tr><td>2</td><td></td><td>가톨릭대학교 서울의대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031</td><td>1811-2755</td></tr> <tr><td>3</td><td></td><td>강동경희대학교병원</td><td>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로592</td><td>1577-5500</td></tr> <tr><td>4</td><td></td><td>강북삼성병원</td><td>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운안로29</td><td>1569-8114</td></tr> <tr><td>5</td><td></td><td>고려대학교 구로병원</td><td>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로148</td><td>02-3056-1114</td></tr> <tr><td>6</td><td></td><td>고려대학교 안암병원</td><td>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td><td>1577-0683</td></tr> <tr><td>7</td><td></td><td>국립중앙의료원</td><td>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td><td>02-2260-7114</td></tr> <tr><td>8</td><td></td><td>서울시립병원</td><td>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51</td><td>02-3410-2114</td></tr> <tr><td>9</td><td></td><td>서울대학교병원</td><td>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학로 101</td><td>1588-5700</td></tr> <tr><td>10</td><td></td><td>서울아산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td><td>1628-7375</td></tr> <tr><td>11</td><td></td><td>서울특별시 보건매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구 광교로5길20</td><td>02-670-2114</td></tr> <tr><td>12</td><td></td><td>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td><td>1566-6500</td></tr> <tr><td>13</td><td></td><td>순천향대학교 두원 서울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구 대시광로50</td><td>02-709-0114</td></tr> <tr><td>14</td><td></td><td>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td><td>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11</td><td>1569-6114</td></tr> <tr><td>15</td><td></td><td>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td><td>1569-1004</td></tr> <tr><td>16</td><td></td><td>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td><td>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양로1071</td><td>1646-3000</td></tr> <tr><td>17</td><td></td><td>연세대학교 강계세브란스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45</td><td>02-950-1114</td></tr> <tr><td>18</td><td></td><td>원광대학교 강릉신심병원</td><td>서울특별시 영월포구 신심로1</td><td>02-659-5114</td></tr> <tr><td>19</td><td></td><td>부산백병원</td><td>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636</td><td>167-6625</td></tr> <tr><td>20</td><td></td><td>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td><td>02-950-1114</td></tr> <tr><td>21</td><td></td><td>중앙대학교병원</td><td>서울특별시 용인구 목격로102</td><td>1800-1114</td></tr> </tbody> </table>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8)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	02-3497-6100	2		서원의료재단 씨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 320	1566-6500	3	서울	진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	02-910-3103	4	(6)	한글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2-1729	5		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02-759-9900	6		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곡로 322	02-3623-1127	7	부산	서원의료재단 씨재 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8		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	051-800-1101	9	인천	(1) 의용병원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의 (송도동 13-49)	1600-000	10		서원의료재단 대우강북검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1	대구	(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053-759-9982	12		서원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	062-425-2188	13	(7)	(4)서원(의)학연구소(SOIL)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	1800-0119	14		녹십자의료재단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	1566-0131	15		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	031-429-0700	16	경기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	3888-1530	17		진료법인 씨재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031-936-2728	18		티씨엔엠의원	경기도 용인시 용인로 1545	043-242-4950	19	충북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2-4950	20	전북	(1)	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	063-255-9119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대학교 서울의대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031	1811-2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로592	1577-55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운안로29	156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로148	02-305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6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서울시립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5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628-7375	11		서울특별시 보건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광교로5길20	02-6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566-6500	13		순천향대학교 두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대시광로50	02-709-0114	14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11	1569-6114	1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569-1004	16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양로1071	1646-3000	17		연세대학교 강계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45	02-950-1114	18		원광대학교 강릉신심병원	서울특별시 영월포구 신심로1	02-659-5114	19		부산백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636	167-6625	20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02-950-1114	2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목격로102	1800-1114	<p>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p> <p>▶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알람 자료 - 공고/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p> <p>[검사전문기관 : 21개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지역</th> <th>기관명</th> <th>주소</th> <th>대표연락처</th> </tr> </thead> <tbody> <tr><td>1</td><td>서울</td><td>(5) 삼광의료재단</td><td>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td><td>02-3497-6100</td></tr> <tr><td>2</td><td></td><td>씨재의료재단 씨재의원</td><td>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320</td><td>1566-6500</td></tr> <tr><td>3</td><td></td><td>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td><td>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td><td>02-910-2100</td></tr> <tr><td>4</td><td></td><td>한국의료재단</td><td>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td><td>02-517-1728</td></tr> <tr><td>5</td><td></td><td>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td><td>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td><td>053-759-9982</td></tr> <tr><td>6</td><td>부산</td><td>(3)</td><td>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td><td>1566-6500</td></tr> <tr><td>7</td><td></td><td>(8)삼광의료재단 에스앤에프의원</td><td>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td><td>051-800-5101</td></tr> <tr><td>8</td><td></td><td>성모병리과의원</td><td>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232-60</td><td>051-655-1885</td></tr> <tr><td>9</td><td>인천</td><td>(1)</td><td>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송도동 13-49)</td><td>1600-0021</td></tr> <tr><td>10</td><td>대구</td><td>(2)</td><td>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td><td>1566-6500</td></tr> <tr><td>11</td><td></td><td>(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td><td>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td><td>1522-2909</td></tr> <tr><td>12</td><td></td><td>씨재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td><td>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td><td>062-425-2188</td></tr> <tr><td>13</td><td>광주</td><td>(2)</td><td>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td><td>02-524-4037</td></tr> <tr><td>14</td><td>경기</td><td>(6)</td><td>(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td><td>1800-0119</td></tr> <tr><td>15</td><td></td><td>(5)녹십자의료재단</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td><td>1566-0131</td></tr> <tr><td>16</td><td></td><td>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td><td>031-429-0700</td></tr> <tr><td>17</td><td></td><td>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td><td>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td><td>031-936-2728</td></tr> <tr><td>18</td><td></td><td>신원의료(에스.큐.엠, SQL)ab</td><td>경기도 용인시 용인로155</td><td>031-936-2728</td></tr> <tr><td>19</td><td></td><td>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td><td>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td><td>1899-1510</td></tr> <tr><td>20</td><td>충북</td><td>(1)</td><td>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td><td>043-242-4950</td></tr> <tr><td>21</td><td>전북</td><td>(1)</td><td>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td><td>063-255-9119</td></tr> </tbody> </table>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5) 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	02-3497-6100	2		씨재의료재단 씨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320	1566-6500	3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	02-910-2100	4		한국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053-759-9982	6	부산	(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8)삼광의료재단 에스앤에프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	051-800-5101	8		성모병리과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232-60	051-655-1885	9	인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송도동 13-49)	1600-0021	10	대구	(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1		(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1522-2909	12		씨재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	062-425-2188	13	광주	(2)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	02-524-4037	14	경기	(6)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	1800-0119	15		(5)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	1566-0131	16		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031-429-0700	17		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031-936-2728	18		신원의료(에스.큐.엠, SQL)ab	경기도 용인시 용인로155	031-936-2728	19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1899-1510	20	충북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2-4950	21	전북	(1)	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	063-255-9119	<p><진단총괄팀>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현행화('21.3.30.기준)</p>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8)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	02-3497-6100																																																																																																																																																																																																																																																																																																																																					
2		서원의료재단 씨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 320	1566-6500																																																																																																																																																																																																																																																																																																																																					
3	서울	진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	02-910-3103																																																																																																																																																																																																																																																																																																																																					
4	(6)	한글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2-1729																																																																																																																																																																																																																																																																																																																																					
5		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02-759-9900																																																																																																																																																																																																																																																																																																																																					
6		한국진단검사의학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곡로 322	02-3623-1127																																																																																																																																																																																																																																																																																																																																					
7	부산	서원의료재단 씨재 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8		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	051-800-1101																																																																																																																																																																																																																																																																																																																																					
9	인천	(1) 의용병원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의 (송도동 13-49)	1600-000																																																																																																																																																																																																																																																																																																																																					
10		서원의료재단 대우강북검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1	대구	(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053-759-9982																																																																																																																																																																																																																																																																																																																																					
12		서원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	062-425-2188																																																																																																																																																																																																																																																																																																																																					
13	(7)	(4)서원(의)학연구소(SOIL)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	1800-0119																																																																																																																																																																																																																																																																																																																																					
14		녹십자의료재단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	1566-0131																																																																																																																																																																																																																																																																																																																																					
15		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	광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	031-429-0700																																																																																																																																																																																																																																																																																																																																					
16	경기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중앙로 53길 (8층) 신원빌딩	3888-1530																																																																																																																																																																																																																																																																																																																																					
17		진료법인 씨재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031-936-2728																																																																																																																																																																																																																																																																																																																																					
18		티씨엔엠의원	경기도 용인시 용인로 1545	043-242-4950																																																																																																																																																																																																																																																																																																																																					
19	충북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2-4950																																																																																																																																																																																																																																																																																																																																					
20	전북	(1)	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	063-255-9119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대학교 서울의대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031	1811-2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로592	1577-55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운안로29	156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로148	02-305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6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서울시립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5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628-7375																																																																																																																																																																																																																																																																																																																																					
11		서울특별시 보건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광교로5길20	02-6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566-6500																																																																																																																																																																																																																																																																																																																																					
13		순천향대학교 두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대시광로50	02-709-0114																																																																																																																																																																																																																																																																																																																																					
14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11	1569-6114																																																																																																																																																																																																																																																																																																																																					
1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1569-1004																																																																																																																																																																																																																																																																																																																																					
16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양로1071	1646-3000																																																																																																																																																																																																																																																																																																																																					
17		연세대학교 강계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45	02-950-1114																																																																																																																																																																																																																																																																																																																																					
18		원광대학교 강릉신심병원	서울특별시 영월포구 신심로1	02-659-5114																																																																																																																																																																																																																																																																																																																																					
19		부산백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636	167-6625																																																																																																																																																																																																																																																																																																																																					
20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용인시 용인로155	02-950-1114																																																																																																																																																																																																																																																																																																																																					
2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용인구 목격로102	1800-1114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서울	(5) 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덕로41길57	02-3497-6100																																																																																																																																																																																																																																																																																																																																					
2		씨재의료재단 씨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호대로320	1566-6500																																																																																																																																																																																																																																																																																																																																					
3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유봉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포로 68	02-910-2100																																																																																																																																																																																																																																																																																																																																					
4		한국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053-759-9982																																																																																																																																																																																																																																																																																																																																					
6	부산	(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8)삼광의료재단 에스앤에프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78 6층, 7층	051-800-5101																																																																																																																																																																																																																																																																																																																																					
8		성모병리과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232-60	051-655-1885																																																																																																																																																																																																																																																																																																																																					
9	인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문로150(송도동 13-49)	1600-0021																																																																																																																																																																																																																																																																																																																																					
10	대구	(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1		(9)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1522-2909																																																																																																																																																																																																																																																																																																																																					
12		씨재의료재단 씨재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동호로 200 5, 6층	062-425-2188																																																																																																																																																																																																																																																																																																																																					
13	광주	(2)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	02-524-4037																																																																																																																																																																																																																																																																																																																																					
14	경기	(6)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용인(의)학의 A동	1800-0119																																																																																																																																																																																																																																																																																																																																				
15		(5)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천로 300길 107	1566-0131																																																																																																																																																																																																																																																																																																																																					
16		한국노벨리스 진단검사의학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로 103	031-429-0700																																																																																																																																																																																																																																																																																																																																					
17		연세의료원(연세)에스앤에프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031-936-2728																																																																																																																																																																																																																																																																																																																																					
18		신원의료(에스.큐.엠, SQL)ab	경기도 용인시 용인로155	031-936-2728																																																																																																																																																																																																																																																																																																																																					
19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수하로109빌딩 13-8	1899-1510																																																																																																																																																																																																																																																																																																																																					
20	충북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2-4950																																																																																																																																																																																																																																																																																																																																					
21	전북	(1)	이기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	063-255-9119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13	<p>〈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p> <p>○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 '20.12.30 시행)</p> <p>*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p> <p>**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p>	<p>○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p> <p>▶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p>	<p>〈환자관리팀〉 자구 수정</p>
214	<p>〈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p> <p>○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p> <p>☞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p>	<p>-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p> <p>▶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p>	<p>〈환자관리팀〉 자구 수정</p>
225	<p>(신설)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p>	<p>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p> <p>1. 개인</p> <p>○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운영시간에 맞추어 방문, 선별진료소 방문 전까지는 자택(검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 격리 - 보건소 방문 시 자가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유전자검사(PCR) 실시 - 검사 후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고, 유전자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 <p>▶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동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이동 수단을 활용(대중교통 이용 자제) ② 자가검사에 사용된 물품(창갑, 면봉, 검사키트 등)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함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제품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 <p>○ 자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신고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불필요 - 단, 임상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음성이라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유전자검사(PCR) 실시 <p>2. 시설(기관, 단체 등)</p> <p>○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자) 검사자는 기관에서 지정한 방역관리자에게 양성결과를 즉시 알리고, 이후 절차는 방역관리자의 조치·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보건소)로 방문 <p>▶ 보건소 방문 시 자가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유전자검사(PCR) 실시 ▶ 검사 후 즉시 자택으로 이동하고, 확진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p>	<p>〈진단총괄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로 관련 부록 및 붙임 1(안내사항), 2(Q&A) 추가</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230	<p>〈부록 21〉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p>	<p>〈부록 22〉</p> <p>부록 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 기준]</p> <p>▶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p> <p>① 인상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 인상호흡기 예르모(CP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p> <p>② 인상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예) 고령인 산소호흡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상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예상되는 자</p> <p>③ 기타 중증환자로 산소호흡 필요가 있는 자 - (예)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당 분당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p> <p>※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중증환자 전원병상 퇴실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 기준 ※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실(원) 대상 병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① 입실 24시간 동안 혹은 최초 중증환자 입실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10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 비강카테라 O₂포화도(SpO₂)는 94% 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 흡부 양상에서 양면의 진행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② 최초 중증환자 입실(단,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20일 경과된 경우 단, 아래 예외 사항(면역저하) 환자, 원내 자체 적정성 판단 등)은 제외</p> <p>* 예외사례 (※ 소생치료 계속 필요) - हाल 치료 중인 환자 -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 황폐화(파우더) 바이러스 보유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per microliter)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 기타 해당 의료기관 내 중환자실(중환자실) 전문의,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등 소생치 등이 환자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감염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참작한 경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일일(중환자) 격리병상 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③ 사전면역요법(항체)을 착상한 경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일일 병상</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④ 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을 먼저 충족시키는 경우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호전 추세 등</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일일 병상</p> </td> </tr> </tbody> </table>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 기준 ※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전실(원) 대상 병상	<p>① 입실 24시간 동안 혹은 최초 중증환자 입실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10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 비강카테라 O₂포화도(SpO₂)는 94% 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 흡부 양상에서 양면의 진행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p>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p>② 최초 중증환자 입실(단,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20일 경과된 경우 단, 아래 예외 사항(면역저하) 환자, 원내 자체 적정성 판단 등)은 제외</p> <p>* 예외사례 (※ 소생치료 계속 필요) - हाल 치료 중인 환자 -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 황폐화(파우더) 바이러스 보유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per microliter)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 기타 해당 의료기관 내 중환자실(중환자실) 전문의,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등 소생치 등이 환자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감염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참작한 경우</p>	<p>일일(중환자) 격리병상 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p>③ 사전면역요법(항체)을 착상한 경우</p>	<p>일일 병상</p>	<p>④ 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을 먼저 충족시키는 경우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호전 추세 등</p>	<p>일일 병상</p>	<p>〈진단총괄팀〉 부록 21 삽입에 따른 번호 수정</p>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퇴실 기준 ※ 아래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전실(원) 대상 병상												
<p>① 입실 24시간 동안 혹은 최초 중증환자 입실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10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 비강카테라 O₂포화도(SpO₂)는 94% 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 흡부 양상에서 양면의 진행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p>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p>② 최초 중증환자 입실(단, 불경화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인(보통) 20일 경과된 경우 단, 아래 예외 사항(면역저하) 환자, 원내 자체 적정성 판단 등)은 제외</p> <p>* 예외사례 (※ 소생치료 계속 필요) - हाल 치료 중인 환자 -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 황폐화(파우더) 바이러스 보유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per microliter)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 - 기타 해당 의료기관 내 중환자실(중환자실) 전문의,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관리실 등 소생치 등이 환자의 임상상태, 검사결과 감염력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참작한 경우</p>	<p>일일(중환자) 격리병상 중·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p>												
<p>③ 사전면역요법(항체)을 착상한 경우</p>	<p>일일 병상</p>												
<p>④ 위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제 기준을 먼저 충족시키는 경우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호전 추세 등</p>	<p>일일 병상</p>												
233	<p>〈신설〉 〈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p>	<p>부록 23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p> <p>□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음 ○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는 있음 <p>□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시 반려동물 관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시 반려동물이 인지되는 경우(보건부서) - 반려동물이 확인될 경우 확진자와 반려동물의 관계 및 현황 파악(사육기간, 사육형태, 관련인 등) ○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구 동물담당부서에 안내(보건부서 → 동물담당부서)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이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동물담당부서→보건부서) - 노출된 수의사 및 보호소 등 관련 노출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보건부서)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접촉자 분류 및 증상유무 등 위험도평가, 능동감시 ▶ 노출자 증상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결과 전까지 자가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찰 및 사육관리(동물담당부서)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증상변화 관찰, 진료 및 사육관리 시 개인보호구(가운) 착용 등</p> <p>□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 관리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된 경우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로부터도 격리조치 ○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이 반려동물 돌보기(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 ○ 반려동물 쓰다듬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접촉 피하기 ○ 반려동물을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하고 반려동물 접촉 전·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세정 및 소독 ○ 반려동물이 아플때에 코로나19 의심·확진자가 직접 동물병원 방문 금지 	<p>〈환자관리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방안」 보고 건(‘21.2.10.) 관련 내용 추가</p>										

쪽	현행(9-5-1판)	10판 개정	개정사유
Q&A			
243	<p>3. 검사</p> <p>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p>	<p>3. 검사</p> <p>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p> <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p> <p>▶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p> <p>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p> <p>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p> <p>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p> <p>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p>	<p>〈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p> <p>무료 검사 기관 구분 및 검사 안내 추가</p>
244	<p>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p> <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p>	<p>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p> <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p>	<p>〈중수본 선별진료지원팀〉</p> <p>무료 검사 기관 구분</p>
257	<p>7. 격리입원치료비</p>	<p>(삭제)</p>	<p>〈환자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p>
261	<p>9. 청소 및 소독</p>	<p>(삭제)</p>	<p>〈법무지침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p>